



2023

나만의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어가는

전주온빛



# 교육과정 설명회



전주온빛초등학교

# 2023학년도 교육과정 안내

## 1 본교 현황(2023. 3. 2)

### 가. 학교 연혁

- 2015. 03. 01. 전주온빛초등학교 개교(초등 23학급, 유치원 3학급)
- 2020. 03. 01. 제3대 이윤숙 교장 부임
- 2022. 12. 30. 제8회 졸업(총 1,712명)
- 2023. 03. 01. 61학급 편성(초등 61학급, 유치원 3학급)

### 나. 학생 및 교직원 현황

학 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9	9	9	11	12	11	61
학 생 수	남	105	116	126	146	151	796
	여	102	111	114	137	166	769
	계	207	227	240	283	317	1,565

구분	교원							유치원					교육일반										총원	
	교장	교감	교사	보건의사(기간제)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소계	원감	교사	시간제교사	소계	행정실장	일반직	행정대체	교실무	특수교육지도	초등보통교사	방과후실무사	조리사원	청소	당직		사복요원
남	0	1	12	0	0	0	13	0	0	0	0	1	1	2	0	0	0	0	0	0	2	2	2	8
여	1	1	61	2(1)	1	1	68	1	5	1	7	0	6	0	2	1	9	1	14	2	0	0	0	35
계	1	2	73	2(1)	1	1	81	1	5	1	7	1	7	2	2	1	9	1	14	2	2	2	43	131

### 다. 시설현황

학교부지	보통교실	유치원	특별실				관리실							부속실													
			과학실	도서실	컴퓨터실	돌봄용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숙직실	보건의실	강당	시청각실	유치원자료실	교사연구실	상담실	준비실	전담실	자료실	방과후강의실	모의수업실	등사실	서고	화장실	식생활관	조리실	
총부지 11,827.7㎡ 건평 12,906.88㎡	61	3	1	1	1	2	1	1	1	1	1	1	1	1	1	7	1	3	2	4	1	1	1	1	31	1	1

## 2

## 온빛 교육의 비전

교육비전

**소통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

교육지표

나만의 빛깔로 큰 꿈 가꾸어 온 누리에 빛이 되자

자신의 꿈을 키우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류 공영의 이상을 위해 자신의 역량과 따뜻한 마음을 갖춘 어린이

교육목표

**학생**

스스로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

**교사**

학습공동체로  
성찰하며  
성장하는  
**교사**

**학부모**

교육공동체로  
소통하며  
함께 하는  
**학부모**

중점교육

배움이 즐거운

**교사교육과정 운영**

-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삶-배움이 어우러지는 학습 활동
- 빛깔 있는 **학년공동교육과정** 운영
- 학년 교육과정 나눔의 날
- 성장 평가제 운영

생각이 자라는

**독서교육**

- 함께하는 아침 독서 활동
- 학년별 독서탈레이 활동
- 삶을 가꾸는 독서글쓰기 교육
- 토의·토론 학습
- 학부모 명예사서 운영

스스로 세우는

**학생 자율 자치활동**

- 1인 1역할
- 학급 학년 다모임 활동
- 전교 어린이회 활성화
- 학생 자율 자생 동아리
- 학년 캠페인 활동
- 또래 상담 활동 강화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 3

## 요일별 시간 운영

구분	2023학년도 학년별 주간 수업 운영					
	월	화	수	목	금	계
1학년	5	4	5	4	5	23
2학년	5	4	5	4	5	23
3학년	5	5(6)	5	5	5	25(26)
4학년	5	5(6)	5	5	5	25(26)
5학년	6	6	5	6	6	29
6학년	6	6	5	6	6	29

### 4

##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학기별	1학기						2학기						합계			
	3	4	5	6	7	소계	8	9	10	11	12	1		2	소계	
수업일수	22	20	20	20	20	102	9	19	19	22	20	0	0	89	191	
비 고 참 고	방 학	여름방학		2023.07.29.(토) ~ 2023.08.20.(일)												
		겨울방학		2023.12.30.(토) ~ 2024.02.29.(목)												
	참 고	시 업 식		2023.03.02.(목)												
		입 학 식		2023.03.02.(목)												
		학부모상담주간		2023.03.27.(월)~03.31.(금)/ 2023.09.21.(목)~09.27(수)												
		학교장재량휴업일		2023.05.01.(월), 2023.05.29.(월), 2023.06.05.(월), 2023.10.02.(월)												
		여름방학식		2023.07.28.(금)												
		개 학 식		2023.08.21.(월)												
		졸 업 식		2023.12.29.(금)												
		종 업 식		2023.12.29.(금)												

3월							4월							5월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2	3	4	5	6	7	8		1	2	3	4	5	6					1	2	3
5	6	7	8	9	10	11	9	10	11	12	13	14	15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6	17	18	19	20	21	22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3	24	25	26	27	28	29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31	1	30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1
1(수) 삼일절 2(목) 입학식/시업식 16(목) 1학기 학급회장 선거 22(수) 교육과정 설명회 27(월) 학부모 상담주간(~31일)							3(월) 과학의 달 주간(~7일) 11(화) 5학년 현장체험학습(1~6반) 13(목) 5학년 현장체험학습(7~12반) 17(월) 3학년 현장체험학습(1~5반) 18(화) 6학년 현장체험학습(1~11반) 19(수) 3학년 현장체험학습(6~9반) 4학년 현장체험학습(1~6반) 20(목) 4학년 현장체험학습(7~11반) 24(월) 3, 4학년 수상안전교육 (1~3반/ ~28일) 25(화) 1학년 현장체험학습(1~4반) 27(목) 1학년 현장체험학습(5~9반)							1(월) 재량휴업일(근로자의 날) 4(목) 2학년 현장체험학습(1~9반) 5(금) 어린이날 8(월) 1학년 놀이마당(~9일) 9(화) 수상안전교육 (3학년 4~6반, 4학년 4~7반/ ~15일) 16(화) 4학년 놀이마당(~17일) 17(수) 4학년 농촌진흥청 견학(1~4반) 18(목) 3학년 놀이마당(~19일) 4학년 농촌진흥청 견학(5~8반) 19(목) 4학년 농촌진흥청 견학(9~11반) 22(월) 2학년 놀이마당(~23일) 23(화) 수상안전교육 (3학년 7~9반, 4학년 8~11반/ ~26일) 24(수) 자체소방훈련 25(목) 6학년 놀이마당 29(월) 재량휴업일 30(화) 5학년 놀이마당(~6월1일)							5(월) 개교기념일 6(화) 현충일 7(수) 5학년 영어체험센터(1~4반/~8일) 9(금) 5학년 영어체험센터(5~8반/~12일) 13(화) 5학년 영어체험센터(9~12반/~14일) 20(화) 학부모초청 수업						

7월							8월							9월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4	5	6	7	8			1	2	3	4	5						1	2	1	2	3	4	5	6	7
9	10	11	12	13	14	15	6	7	8	9	10	11	12	3	4	5	6	7	8	9	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17	18	19	20	21	22	23	22	23	24	25	26	27	28
30	31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29	30	31				
4(화) 5학년 119안전체험(5반) 5(수) 5학년 119안전체험(8반) 11(화) 5학년 119안전체험(6반) 1학기 워크숍(~12일) 13(목) 2학년 119안전체험(1~3반) 5학년 119안전체험(11반) 18(화) 2학년 119안전체험(4~6반) 20(목) 2학기 전교회장 선거 2학년 119안전체험(7~9반) 5학년 119안전체험(4반) 25(화) 5학년 119안전체험(3반) 26(수) 5학년 119안전체험(1반) 27(목) 5학년 119안전체험(9반) 28(금) 여름방학식							15(화) 광복절 21(월) 개학식 24(목) 2학기 학급회장 선거							19(화) 6학년 테마식현장체험학습 (1~11반/ ~20일) 21(목) 학부모 상담주간(~27일) 28(목) 추석연휴 29(금) 추석							2(월) 재량휴업일 3(화) 개천절 9(월) 한글날 10(화) 2학년 현장체험학습(1~9반) 12(목) 3학년 현장체험학습(6~9반) 13(금) 3학년 현장체험학습(1~5반) 17(화) 1학년 현장체험학습(5~9반) 18(수) 4학년 현장체험학습(7~11반) 19(목) 1학년 현장체험학습(1~4반) 4학년 현장체험학습(1~6반) 24(화) 5학년 현장체험학습(7~12반) 25(수) 합동소방훈련 5학년 119안전체험(2,7,10,12반) 26(목) 5학년 현장체험학습(1~6반)						

11월							12월							1월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3	4	5	6	7	8	9		1	2	3	4	5	6					1	2	3
5	6	7	8	9	10	11	10	11	12	13	14	15	16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7	18	19	20	21	22	23	14	1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4	25	26	27	28	29	30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26	27	28	29	30	1	2	31							28	29	30	31				25	26	27	28	29		
6(월) 정보통신윤리교육주간(~10일) 10(금) 4학년 교육과정 나눔의 날 15(수) 3학년 교육과정 나눔의 날 17(금) 1학년 교육과정 나눔의 날 22(수) 6학년 교육과정 나눔의 날 24(금) 2, 5학년 교육과정 나눔의 날 28(화) 2학기 워크숍(~29일)							21(목) 2024학년도 1학기 전교회장선거 25(월) 성탄절 29(금) 종업식/졸업식														9(금) 설날연휴 12(월) 대체공휴일 19(월) 교육과정수립주간(~23일)						
※위 일정은 교육과정 운영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 가. 배움과 성장 중심 평가의 목적

- 1) 학생들의 교육목표 성취도 파악 및 분석으로 수업의 질 개선
- 2) 교수-학습활동과 평가활동을 일치시켜 개별화 지도 자료로 활용
- 3) 교과학습 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아동들의 학습 의욕과 능률을 향상시켜 전인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자주적, 도덕적 인간 교육에 기여

### 나. 배움과 성장 중심 평가의 방침

- 1) 성장 중심 상시 수행평가 실시 및 수행 평가 예고
- 2) 주제통합 교육과정운영에 의한 교과 통합 평가 실시
- 3) 담임교사의 수시 지속적 관찰에 의한 행동 평가
- 4) 학생상호간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관계 유도
- 5) 학년교육과정운영계획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책임 운영
- 6) 평가 결과의 통지 및 환류에 의한 소통

### 다. 배움과 성장 중심 교과평가 계획

영역	유형	시기	대상	횟수	비고
진단	진단 주간 운영	3월	2~6학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목: 국어, 수학</li> <li>• 학부모 상담 자료 활용</li> <li>• 교수-학습 기초 자료 수집</li> </ul>
	기초더딤아 판별	3월	2~6학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평가원 자료 활용</li> <li>• 학습 더딤아 지도 계획 수립</li> </ul>
과정평가	수행평가	수시	전교생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학년 성취기준 분석 후, 학년 평가 계획 수립</li> <li>• 학습 과정 중 수시 평가</li> <li>• 학습자의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li> <li>• 수업 도달도 확인 및 피드백</li> <li>•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의 통합 평가</li> </ul>
평가통지	과정평가 결과물	수시	전교생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과정에서 나온 학습결과물 담임 침삭 및 통지</li> <li>• 부모 확인</li> </ul>
	네이스 통지표 활용	7월 12월	전교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평가</li> <li>• 핵심역량 반영</li> <li>• 학생성장 누가 기록한 내용</li> </ul>

### 마.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영역	평가 요소	시기	대상	평가 방법
자치활동	· 학급회 활동, 역할 분담, 소집단활동	연중	전교생	· 지도교사 평가, 담임 종합
동아리활동	· 취미와 특기 신장 노력도			· 영역별 특성을 살려 평가
봉사활동	· 학교, 사회 봉사활동 참여도			· 척도표 작성 활용
진로활동	· 자기이해 및 직업 이해 정도			· 장점, 특기, 우수면 기록
				· 평가척도표작성 누가기록
				· 서술식으로 기록

# 학부모 연수 자료

## 1

### 불법 찬조금 근절 및 청렴교육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손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손지임

## 2

### 불법찬조금의 유형

- 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 나.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대회 출전 및 훈련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다.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라.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 단,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부모측에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모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이 아닌 회계처리 부적정을 적용함.

## 3

###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 매스컴 등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정직한 교육자 사기 저하
-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학부모 간 신뢰 하락
-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 4

### 손지 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 민원신고센터 손지수수, 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http://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http://www.epeople.or.kr) → 민원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 2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기대효과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을 구현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 3 선행학습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피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

##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

##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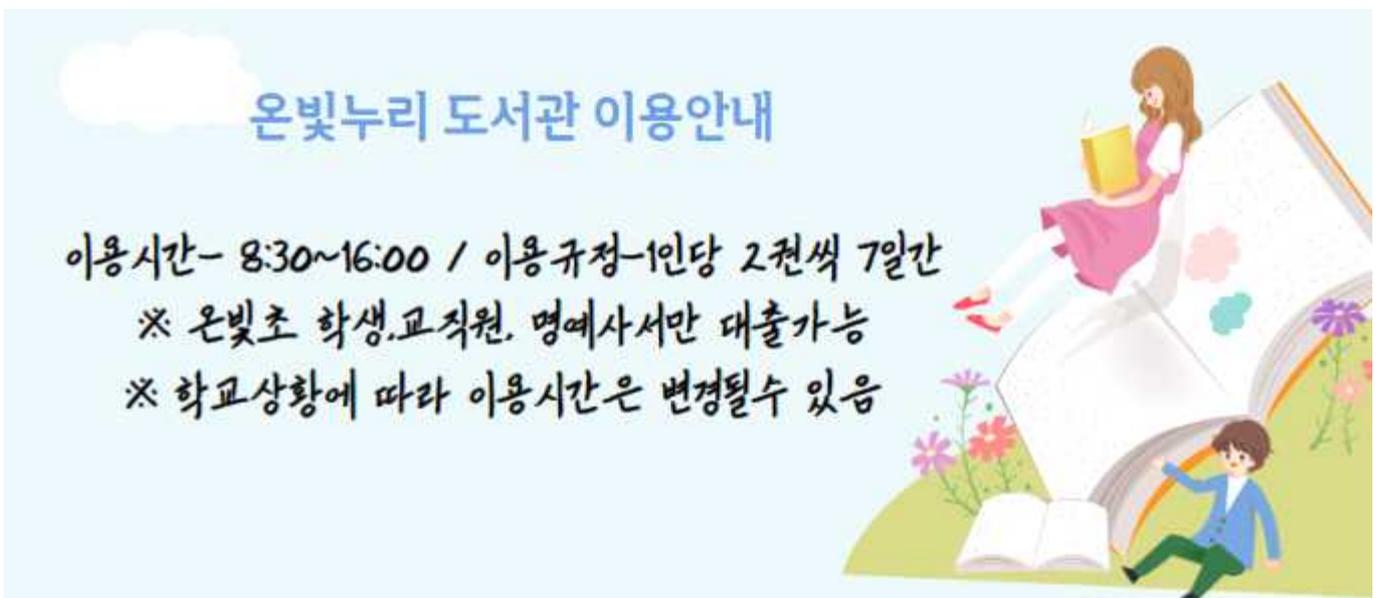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1.3.11.)한 2021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4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



온빛누리 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시간- 8:30~16:00 / 이용규정-1인당 2권씩 7일간

- ※ 온빛초 학생,교직원, 명예사서만 대출가능
- ※ 학교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은 변경될수 있음

The image is a colorful illustration for a library notice. It features a girl in a pink dress sitting on a large open book, reading. Below her, a boy in a blue suit is sitting on the ground, also reading. The background is light blue with a white cloud and a rainbow. The text is in Korean and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library's hours and borrowing rules.

### 3

## 학교폭력 예방교육

### 1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2

#### 학교폭력의 이해

##### 1.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침뺨기, 눈 흘기기,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학교폭력일까요? 네,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휴대폰 문자, SNS를 통한 조롱,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피해학생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폭력'입니다.

##### 2.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교사와의 상담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 3.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진급하면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일진회'등 청소년 폭력씨클에 의한 집단폭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학교 일진회와 피해학생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 4. 학교폭력,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전화 117, 문자 #0117)

학교폭력의 발생을 교사, 부모, 학교, 경찰 등에 즉각적으로 알릴 때 비로소 가해학생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학부모 폭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신고는 과거의 폭력, 현재의 폭력, 미래의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3

#### 학교폭력예방하기(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1. 자녀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알려주세요.
2. 매일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3.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4. 휴대폰 안 쓰는 시간 약속하기 등 건강한 휴대폰 사용 습관을 길러주세요.
5.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6.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도록 당부해주세요.
7. 자녀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주세요.
8.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
9. 학부모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10.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으로 상담하세요.

### 4

#### 학교폭력 피해 징후 알아보기(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켜봐주세요)

1. 늦잠을 자거나 몸이 자주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무엇인가에 열중하지 못한다.
4.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고 구겨져 있다.
5.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새로 사달라고 한다.
6.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휴대폰 요금이 많아진다.
7. 학교나 학원을 가기 싫어하거나 옳고 싶어 한다.
8. 자녀가 휴대폰을 보고 당황하거나 불안해한다.
9.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5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예시 상황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li> <li>·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li> <li>·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li> </ul>
언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li> <li>·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li> </ul>
금품 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li> <li>·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li> <li>·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li> </ul>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li> </ul>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li> <li>·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li> </ul>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li> <li>·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li> </ul>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li> <li>·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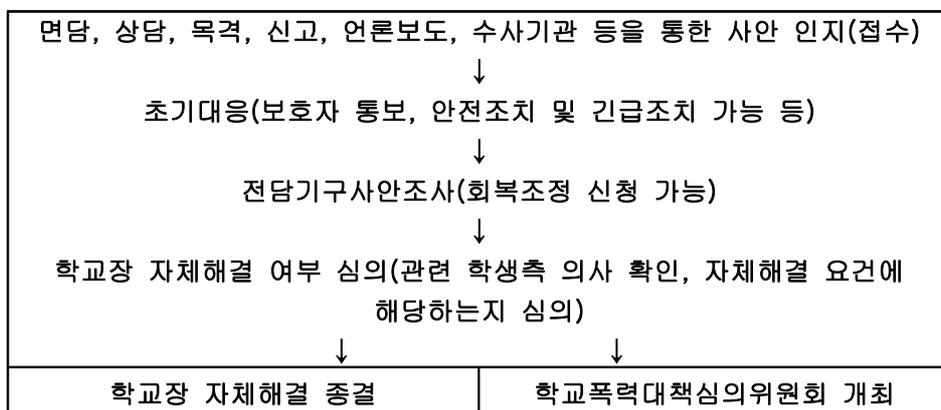
6

**자녀의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시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li> <li>▶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li> <li>▶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li> <li>▶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li> <li>▶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li> <li>▶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li> <li>▶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li> <li>▶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시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li> <li>▶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li> <li>▶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li> <li>▶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li> <li>▶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li> <li>▶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li> <li>▶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li> <li>▶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li> <li>▶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li> <li>▶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li> <li>▶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li> <li>▶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li> </ul>

7

**학교폭력, 어떻게 처리되나요?**



## 4

# 인권 교육

### 1

#### 인권이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평등의 권리 → “사람으로서 행복해지는 수단과 힘!”

◇ 아동인권보호 원칙: 아동에 대한 일체의 차별금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 아이를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해 주세요!

→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세요!

### 2

####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 가. 아동의 학습권 보장(헌법 및 교육기본법)

[헌법 제 32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기본법 제13조]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나. 학생 인권 보장 지침

1. 모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학생의 학습권은 차별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3. 모든 학생은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4. 모든 학생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5. 모든 학생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다. 자녀 존중 심계명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 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 5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학대의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

♣ 아동이란? ☞ 만 18세 미만 (즉, 고등학생도 포함)

###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내용

학대 유형	학대 내용	처벌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임·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가정폭력 신고의무 규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 112

### 1 교권이란?

- 가. ‘교원’의 교육할 권리 (교육권)
- 나.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 다. ‘인간’으로서 교사의 권리

### 2 교권침해사례

#### 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 행위, 면학 분위기 저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 등 학생의 폭행·폭언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교육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요즘의 교육현장에서는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폭행과 폭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이는 현장 교사들의 사기와 사명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다. 불합리한 징계 처분 및 신분 피해 등의 교권침해

징계 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자 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라. 동료간 갈등, 관리자의 불합리한 처우, 직무조건, 신상문제 등의 교권침해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법 제49조)

#### 마.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

#### 바. 성희롱, 성폭력 피해

교육현장 및 직장 내 발생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직원들 간의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성폭력전담 신고센터에서 접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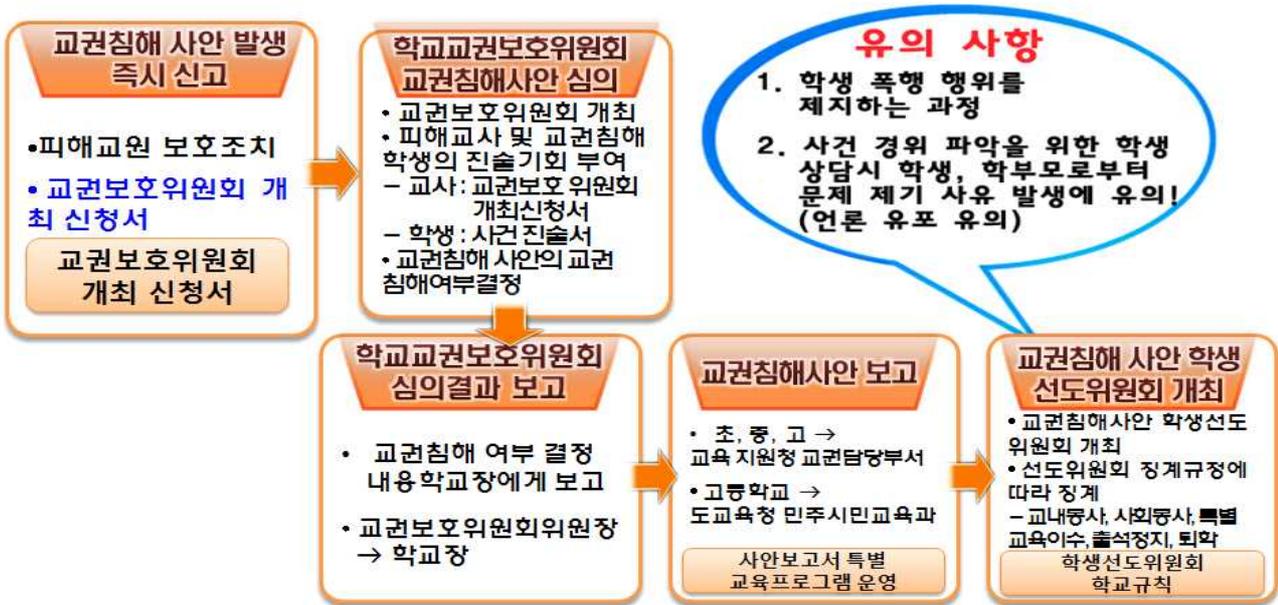
### 3 교권보호위원회

- 가. 구성 : 교감, 생활지도담당교사, 교권보호 담당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인사 6명으로 구성
- 나. 기능 : 교권침해 사안 심의 및 조정 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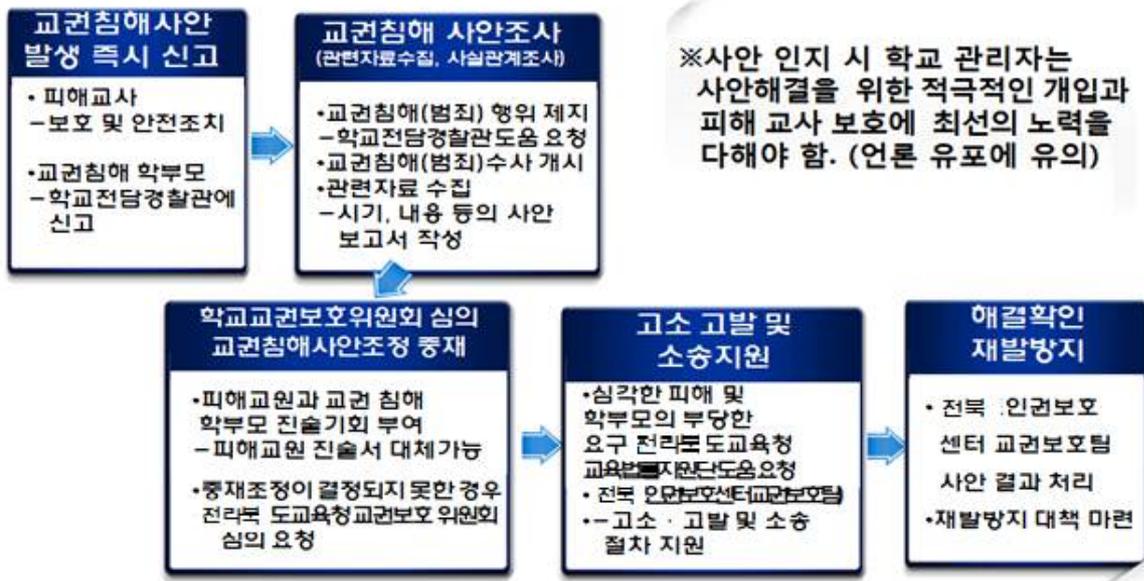
4

## 교권침해 대응 방안

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발생시 대응 절차



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발생시 대응 절차



5

## 교권보호 기구

-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 (각급학교)
- 전라북도 교권 보호 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 전라북도교육청 인권 보호 센터 교권보호팀
- 교육법률지원단 (전라북도교육청)
- 온라인 법률자문 도우미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www.act.go.kr)

## 1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 1

## 성희롱·성폭력·성매매란?

성폭력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괄
성희롱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예) 음란한 농담·언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추행하는 행위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2

## 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법

성폭력 예방법	성폭력 대처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하교 시 어두운 길, 공사장, 외딴 골목을 혼자 걸어가는 것을 피하고 친구와 함께 다니도록 합니다.</li> <li>2. 자녀들의 행선지를 파악합니다.</li> <li>3. 집 안에 있을 때는 항상 문을 잠그고 낯선 사람은 절대 집안에 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부모님 친구라고 하며 접근할 수 있으니 주의)</li> <li>4.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때, 싫은 느낌이 있는 경우 단호히 싫다고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도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li> <li>5. 위급한 상황일 경우 소리를 지르는 등(ex "불이야!")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창문을 깨뜨려 외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li> <li>6. 성폭행이 발생할 것 같다면 그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합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li> <li>2. 안정을 취하며 안전을 확보합니다.</li> <li>3. 치료와 검사, 증거 채취를 위해 몸을 씻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병원에 갑니다. (응급피임약 72시간 내)</li> <li>4.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를 확보하고, 옷이나 장소는 그대로 보존합니다.</li> <li>5.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li> </o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성폭력 피해 및 의심 시 도움 기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국번없이 112</li> <li>-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li> <li>- 청소년긴급전화: 국번없이 1388</li> <li>- 전북 ONE-STOP 지원센터: 063) 278-0117</li> <li>-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063) 246-1375</li> <li>- 전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담의료기관 등</li> <li>*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활용(스마트폰가능)</li> <li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www.sexoffender.go.kr">www.sexoffender.go.kr</a></li> </ul> </div>

## 3

## 사이버 성폭력

## ○ 사이버 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예) 몸 사진·동영상 등 요구·협박, 다른 사람 사진 성적 합성·유포, 몰래 사진·동영상 촬영하거나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 사이버 성폭력 예방법

-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 공유하지 않기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바꾸기
-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 조건만남·성매매 위험이 있는 앱 사용 주의하기
- 인터넷에서 거래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 사이버 성폭력 대처법

**이렇게 행동해요**

사이버성폭력 예방

**만남 요구**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캡처해서 신고하기

**불법촬영 합성영상 유포**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몰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자신이 합성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 영상 전송**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몰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 / 스톱'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몰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

**도움을 요청해요**

사이버성폭력 예방

언제든지 도와드려요!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경찰 (112·117 / 앱: 112긴급신고·스마트국민제보 / 학교전담경찰관)

**영상 유포를 막아주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상담을 받고 싶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www.cyber1388.kr)  
 여성긴급전화1366 (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십대여성인권센터 (010-3232-1318, 카톡·틱톡 cybersatto)

❑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2 양성평등 교육**

**1 양성평등이란?**

-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되거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
- 여자는,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 한 가정 내에서 부부가 상호 존중하고 인정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하듯이 사회조직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인정할 때 사회적 조화가 잘 이루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 실천 전략**

- 평등한 부부의 모습,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 가사 공동 분담, 함께 하는 가족 활동, 경제적 책임의 공유, 자녀 양육 공동 책임, 공동 의사 결정, 그리고 가족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 자녀들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서로 독립적으로 협동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 자녀 양육, 교육에 있어서 평등한 태도를 유지하기
-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고정 관념에 유의하기: “남자답게” “여자답게” 라는 말 쓰지 않기

## 1 흡연 예방 교육

## ○ 담배의 성분

대표 물질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특징/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독물질 (금연실패의 원인)</li> <li>혈관수축작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스팔트의 원료 (끈적임)</li> <li>발암물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기가스와 동일성분</li> <li>각 조직에 산소공급 방해</li> </ul>
유발 질병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말초조직이 썩게 되는 버거씨 질병	전신에 달라붙어 각종 암을 일으킴, 치주염, 입 냄새	산소 부족으로 두뇌활동 저하, 뇌세포 손상, 폐질환, 노화

## ○ 간접 흡연

- 1차 흡연 : 직접 피는 것
- 2차 흡연
  - 주류연 (20%) : 흡연자가 내뿜는 것
  - 부류연 (80%) :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것 ☞ 250여 종 이상의 발암성·독성 화학물질 존재
- 3차 흡연 : 흡연 후 흡연자의 몸이나 섬유(옷, 벽지, 카펫 등)에 배인 유해물질  
☞ 아질산과 같은 다른 기체와 접촉해 1급 발암물질 '니트로사민' 생성

## ○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 피우지 않기
-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살피기
- 보호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 보이기: 금연 가정의 자녀가 금연 성공 확률 높음
- 자녀와 의미 있는 대화 시간 가지기
- 함께 외식 시 금연 지정 음식점 이용하기

## 2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 약물 오·남용이란?

- 오용: 처방된 약을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남용: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이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약물을 부적절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 의사, 약사의 지시에 따라 용법, 용량, 치료목적, 유효기간 등을 정확히 지켜 사용

## &lt;약을 복용 할 때는...&gt;

- 1컵 이상의 물로 복용: 물이 부족하면 약물이 식도에 남게 되어 궤양(상처)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약은 미지근한 물로 복용: 찬물은 위장관에서 약물의 흡수를 저하시킬 우려 있음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과 함께 복용: 우유, 요구르트, 주스, 차 등은 약의 효과에 영향 미침
- 용법과 용량을 지켜 복용
- 처방받은 약 끝까지 다 먹기
- 유효기간을 확인 후 지난 것은 약국에 가져다주기

### 3 음주 예방 교육

- 청소년의 최초 음주 시기 평균 13.1세, 남녀학생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율이 증가했으며, 가족의 권유·강요(41.3%)에 따른 음주 경험이 더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가족 안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지 않도록 어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질병관리청 등(2021),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음주의 폐해: 처음 술을 마신 나이가 어릴수록 알코올 의존자나 남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신체적 폐해		사회적 폐해	
<b>뇌 손상</b> 뇌 발달에 지장, 기억력 및 학습능력 저하		<b>호르몬 분비 이상</b> 키 성장의 문제, 2차 성징 지연	
<b>소화기 이상</b> 오심, 구토, 소화기계 출혈		<b>금단증상</b> 맥박 상승, 혈압 상승, 발한, 불안, 발작 등	
		<b>폭력 및 살인</b>	<b>범죄 행위</b>
		<b>가정 불화와 폭력</b>	<b>대인관계 이상</b>

- 내 아이의 음주를 막는 음주 예방 가이드
  - 자녀에게 절대로 술을 권하지 않기
  - 자녀가 술을 쉽게 접할 수 없도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술 보관하기
  -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술 마시지 않기
  - 미디어에서 주류 광고와 조기 음주 시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자녀의 미디어 시청 관찰하기

### 4 마약 예방 교육

- 마약류란?
  - 느낌, 생각,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생산, 판매, 사용이 통제되는 약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 청소년 마약류 사용 예: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사용,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 오남용 등
-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 마약은 도파민 보상 회로 파괴시킴 → 똑같은 양의 마약을 해도 예전만큼의 기분을 느낄 수 없어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약을 해도 나올 도파민이 없어 재미를 느끼지 못함 → 그런데도 마약을 지속하는 이유는 마약을 했을 때 강렬했던 기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
- 마약의 위험성: 흡입 시 코가 망가짐(코피, 염증으로 숨 쉬기 힘들어짐, 비중격 녹음 등), 주사 시 감염, 사망, 환각(환시, 환청 등), 감정조절 어려워짐, 중독, 의존성(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함), 내성(사용 약물의 양이 점차 증가), 금단형상(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남), 우울증,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교통사고, 강도, 사기, 밀수, 밀매 등 각종 범죄) 등
- 관련 상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

## 4

##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예방 수칙>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② 사람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⑤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5

## 미세먼지 대응 교육

### 1 미세먼지란?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mu$ m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PM<sub>10</sub>)와 초미세먼지(PM<sub>2.5</sub>)로 구분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월)
- 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증상: 기침,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피부 가려움, 안구 건조, 눈 가려움 등

### 2 고농도 미세먼지 대처하기

- 미세먼지 예보 사이트 및 무료문자서비스 신청
  - [에어코리아] <http://www.airkorea.or.kr/>
  -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 <http://air.jeonbuk.go.kr/index.do>
  - 앱 : [우리동네 대기정보]
- 외출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6

## 기타(아토피·구강·시력·체중관리) 교육

### 1 아토피 관리

- 건조한 피부 보습: 하루 2회 이상,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 바르기
- 올바른 목욕: 격일로 목욕,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미지근한 물로 20분 이내 목욕, 샤워보다는 가볍게 몸을 담그는 목욕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피하기
- 자외선이 강한 시간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 땀이 많이 나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 손톱 짧게 유지하기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 및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양질의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유해정보, 스마트폰 중독 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학생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의 확대로 인해 사이버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 교육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 1

##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 1. 우뇌증후군

- 스마트폰 동영상은 좌뇌만을 강하게 자극하여 우뇌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우뇌가 발달되어야하는 직관적 사고기에 좌뇌만 발달하여 좌우 뇌 균형이 깨짐
- 충동성 과잉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 2.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게임 등을 지나치게 오래할 경우 발생
-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스마트폰에 몰두하여 뇌가 팝콘처럼 튀어 오르는 정보에만 반응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현실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

## 3. 학습능력 저해

- 빠르게 움직이는 동영상에 익숙해져 정적인 활동인 독서가 어려워짐
- 자극 -> 정리 -> 표현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보통 '자극'만 이루어짐

## 4. 언어 발달, 정서 인지 발달에 악영향

- 스마트폰 동영상은 단방향으로 이루어져 '듣기', '말하기'의 양방향 소통 시간이 줄어들어 언어 발달의 기회 감소
- 가톨릭대 심리학과 발달심리연구실 실험결과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유아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짐

## 2

## 스마트폰 사용 습관 확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관찰자용/성인용)' 활용

<http://www.iapc.or.kr>

## 3

## 부모님께서 함께 힘써주세요!

- 컴퓨터를 가족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 공간에 둡니다.  
(예) • 거실 등
- 컴퓨터 게임은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 • 일주일에 2번만 가능, 저녁 8시 이전까지만 사용하기  
• 주말에만 1시간 사용하기 등  
※ 습관적인 이용을 방지하려면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 사용의 규칙을 정해요.  
(예) • 인터넷 사용 후에는 반드시 인터넷 사용 시간표 작성하기  
• 인터넷상에서도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함을 교육하기  
•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알람시계를 맞추고 놓고 사용하기 등

- 일주일에 한 번은 컴퓨터나 텔레비전의 휴(休) 요일을 정해요 (취지를 설명하고, 자녀와 의논하여 정한다)
- (예) • 매주 수요일은 컴퓨터와 텔레비전 끄는 날
  - 약속 이행을 위한 보상을 정하세요.
- (예) • 일주일 한번 컴퓨터, 텔레비전 휴요일을 지켰을 경우,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먹기 등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훈련을 합니다.
- (예) • 인터넷 사용조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 결과를 출력해서 사용 계획 다시 세우기
  - 자녀의 일상생활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기(학교생활, 수면, 친구 등)
- 인터넷을 대신하여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 (예) • 캠핑, 야외놀이, 스포츠 활동, 연극이나 영화 관람, 보드게임, 친구들과 놀기, 재미있는 책 읽기 등)

## 4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호나 문자, 음향,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공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돌 등을 던질 수는 없지만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현실공간에서의 폭력과 같은 동일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1. 사이버폭력 왜 문제인가?

사이버상의 폭력은 '청소년기에 교우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갈등'이라거나 '신체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갈취와 같은 외형적인 피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2. 사이버폭력의 유형

- 사이버갈취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기프트콘, 데이터 등을 요구하거나 소액 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 사이버감금 : 인터넷 대화방,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서 특정인이 퇴장하지 못하게 막거나 계속 불려서 비방 또는 욕설을 하는 행위
- 사이버명령 : 와이파이셔틀, 게임 셔틀 등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3.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방과 후, 가정, 학원 등 시공간제한 없이 지속되며, 따돌림, 악성댓글, 허위소문 유포 등 다양하게 발생.
- 신체폭력에 비해 또래관계 형성,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적 폭력이 심리적, 정서적 고통이 매우 큼.
- 대상의 이름 대신 상황을 언급하거나 익명성을 이용해 괴롭히는 등 폭력의 형태가 은밀해지고 교묘해짐.

#### 4.사이버폭력 예방수칙 10가지

- 1) 자녀에게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하도록 한다.
- 2) 평소에 대화를 통해 자녀들의 올바른 언어습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 3) 자녀와 사이버폭력이나 다른 온라인 이슈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한다.
- 4) 자녀가 사이버 상에서 부모 주민번호를 사용치 못하도록 한다.
- 5) 컴퓨터는 거실에 두어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고 사용시간을 정해 놓는다.
- 6)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핀다.
- 7)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음란폭력물 차단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한다.
- 8)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한다.
- 9) 사이버폭력 신고 절차와 피해조력기관을 알아둔다.
- 10) 피해를 당한 경우 직접 해결하지 않도록 하고 선생님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5

#### 원격수업 저작권 Q&A

**Q. (인물이 포함된 화면 이용) 수업 영상을 캡처하여 유튜브 등에 올려도 되나요?**

**A. 화면의 무단 캡처 및 이용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Q. (수업 중 화면 갈무리(캡처)) 수업 시 인물(학생, 교사, 저작물 중 인물)이 포함된 영상을 갈무리(캡처)하여 유튜브 등에 올려도 되나요?**

**A.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갈무리(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